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53

발의연월일: 2021. 2. 5.

발 의 자:이만희·권성동·정점식

정운천 • 안병길 • 홍문표

김선교 • 이양수 • 위성곤

박성민 · 엄태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 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 지 못하고 있으므로,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 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(안 제124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).

이와 함께, 전체 조합장이 선출한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중앙회와 자회사의 경영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 127조, 제131조 등).

또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및 위원장은 외부전문 가 위원 중 호선하며, 회원의 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조합, 중앙회, 자회사 임직원의 조합감사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선출 제한 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5조, 제129조제2항 등)

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4조제1항 단서 중 "제54조제1항"을 "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"으로, "따라"를 "따른"으로 한다.

제1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 중"을 "제2호에 따른 외부전 문가 중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4명"을 "3명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3명"을 "4명"으로 한다.

제127조제1항 단서 중 "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"을 "제4항,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.
- ③ 회장은 중앙회 및 그 자회사(손자회사를 포함한다)의 경영상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.

제127조제5항(종전의 제4항)제1호 중 "바목까지ㆍ차목 및 카목"을 "바목

까지·아목부터 카목까지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 및 제4항"을 "제4항 및 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1항부터 제4항까지"를 "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
- 3.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 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
- 4. 그 밖에 회장,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
- ⑦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,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.

제1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외부전문가는 조합, 중앙회 및 그 자회사(손자회사를 포함한다)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제1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27 조제3항 및 제4항"을 "제127조제4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
이 때,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최대 세 표까지 행사한다.

제131조제3항 중 "제127조제3항 및 제4항"을 "제127조제4항 및 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"을 "제1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제7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"으로, "승진 및 전보는"을 "승진·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"으로, "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"를 "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7항) 중 "사업전담대표이사등"을 "사업전담대표이사등, 조합감사위원장"으로 한다.

제1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기타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·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43조제1항 중 "회장 소속으로"를 "중앙회에"로 한다.

제1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- 조합, 중앙회, 농협경제지주회사,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농협은행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
 농협경제지주회사,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제외한 중앙회

의 자회사(손자회사를 포함한다)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

제14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1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"회장"을 각각 "조합 감사위원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5조의5, 제127조, 제129조, 제130조제2항, 제131조, 제134조, 제143조,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앙회의 준비행위 등에 관한 특례)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, 변경,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4조(대의원회) ① 중앙회에	제124조(대의원회) ①
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	
다. 다만, <u>제54조제1항</u> 을 준용하	<u>제130</u> 조제1항에 따른
는 제161조에 <u>따라</u> 임원의 해임	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
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	54조제1항
하지 아니하다.	<u> 따른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5조의5(인사추천위원회) ①	제125조의5(인사추천위원회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	②
이 구성하고, 위원장은 <u>위원 중</u>	<u>제2호에</u>
에서 호선한다.	따른 외부전문가 중
1.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	1
장 <u>4명</u>	<u>3명</u>
2.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	2
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	
외부전문가(공무원은 제외한	
다)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	
는 <u>3명</u>	<u>4명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27조(회장 등의 직무) ① 회장	제127조(회장 등의 직무) ①
은 중앙회를 대표한다. 다만, <u>제</u>	<u>제4</u>

대표이사등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처리하되,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 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 원장에게,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위임 •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- 1.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 진을 위한 대외 활동
- 2.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 른 회원에 대한 감사
- 3.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사업 및 이와 관 련되는 사업
- 4. 제3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 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
- 5.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 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
- 6.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

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 항.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 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 원회의 위원장-----

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 무를 처리한다.

<u>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</u> <u>업무</u>

<신 설>

- ③ (생략)
-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, 그 업 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 다.
- 2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③ 회장은 중앙회 및 그 자회사
(손자회사를 포함한다)의 경영
상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에
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
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
서는 아니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<u>(5)</u>	 	 	 	

- 1. ------바목까지·아목부터 카목까지 -----
- 2. (현행과 같음)
- 3.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및 조정

4. 그 밖에 회장, 사업전담대표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 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. <신 설>

⑤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제46조제4항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9조(감사위원회) ① (생 략) 제

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 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

이사능 및 조합감사위원장의
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
<u>⑥</u> 제4항 및 제5항
⑦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
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
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
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
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
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
하며,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
회를 대표한다.
<u>8</u>
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
129조(감사위원회) ① (현행과
같음)
②

며,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③ ~ ⑥ (생 략)

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<u>제12</u> 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 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 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

다만, 외부전문가는 조합,
중앙회 및 그 자회사(손자회사
를 포함한다)에서 최근 3년 이
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
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
한다.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세130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)
①
<u>이 때, 회원은 제122</u> 조제5항
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
투표권을 차등하여 최대 세 표
까지 행사한다.
② <u>제127</u>
조제4항 및 제5항

- ③ ~ ⑪ (생 략) 제131조(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) ①・② (생 략)
 - 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 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 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 한다.
 -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, 제 📗 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 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 담대표이사등이 수행한다.

- ⑤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 속된 직원 간의 인사 교류에 관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⑥ (생략)
- ⑦ 회장,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 자는 각각 이사,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

③ ~ ① (현행과 같음) 제131조(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 │ ③ 제127조제4항 및 제5항----(4) ----- 제12 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 전담대표이사등과 제7항에 따 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-------승진·전보 및 인 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-----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이-----. <삭 제>

- 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
- ⑥ ----사업전담대표이사등, 조합감사위원장-----

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43조(조합감사위원회) ① 회원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 --- 중앙회에 -----무를 지도・감사할 수 있는 조 합감사위원회를 둔다.

②·③ (생 략)

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134조(사업) ① ~ ⑤ (생 략) 제134조(사업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>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 상호지원자금과 기타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 원자금 조성・운용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.

| 제143조(조합감사위원회) ① 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44조(위원의 선임 등) ① 조합 제144조(위원의 선임 등) ① 조합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 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(提請)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<단서 신설>

③ • ④ (생 략)

- 제146조(회원에 대한 감사 등) ① ㅈ ·② (생 략)
 - ③ <u>회장</u>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,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· 2. (생략)

1. 조합, 중앙회, 농협경제지주
회사,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
농협은행에서 최근 3년 이내
에 조합감사위원 이외의 임직
원으로 근무한 사람
2. 농협경제지주회사, 농협금융
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제외
한 중앙회의 자회사(손자회사
를 포함한다)에서 최근 1년 이
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
②
다만,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
<u>될 수 없다.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세146조(회원에 대한 감사 등) ①
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조합감사위원장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- ④ (생 략)
- ⑤ <u>회장</u>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, 그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④ (현행과 같음)
⑤ 조합감사위원장
·